

# 배달이륜차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지방경찰청, 주식회사 바로고,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(이하 우아한형제들), 사단법인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(이하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), 손해보험협회,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(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),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(이하 안전보건공단)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배달이륜차의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각 기관은 상호협력 하에 배달이륜차의 교통안전 제고와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.

## 제2조 (상호협력 사항)

① 각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.

- 가. 배달이륜차의 위법행위 근절 및 안전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대응
- 나. 이륜차 안전모·반사스티커 등 교통안전용품 제작, 배달업소 및 이륜차 운전자에게 배부·부착
- 다. 배달이륜차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·홍보·정보제공 활동에 상호 협력

② 각 기관은 다음 사항을 각각 추진한다.

- 가. 서울지방경찰청은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이륜차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 및 강사 지원, 교통법규 등 정보제공
- 나. 손해보험협회·한국교통안전공단·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안전모 및 교통안전용품 제작·배부, 교육 자료와 홍보물품 지원
- 다. 바로고·우아한형제들·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이륜차 교육 수강생 모집하고 후원물품 제공, 안전운행을 위한 정보와 교통법규 정보를 점주·배달원·주문자에게 웹사이트·리플릿·SNS 등을 통해 홍보

### 제3조 (협력사항의 운영방안)

협력사항의 세부사항은 각 기관의 주무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.

### 제4조 (효력)

- ① 본 양해각서는 참여기관 각자의 사회적 명예를 걸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작성하고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- ② 양해각서의 내용 중 기관 간 해석이 다르거나 양해각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③ 본 양해각서는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,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본 양해각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, 바로고, 우아한형제들,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, 손해보험협회, 한국교통안전공단, 안전보건공단은 양해각서를 총 7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월 16일

서울지방경찰청

이주민

바로고

이해권

우아한형제들

박익한

서울퀵서비스  
사업자협회

정선종

손해보험협회

이종희

한국교통안전공단

김배현

안전보건공단

이문교